평창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이창열 의원)

의안 번호	42

발의연월일: 2026년 9월 23일
발 의 자 이창열 의원
찬 성 자 김성기, 남진삼 의원

1. 제안이유

평창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95세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자긍심을 높이며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95세 이상 장수노인을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지급기준일을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나. 장수노인에게 100만원 상당의 평창사랑상품권을 1회 지급하며, 신청 및 지급절차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다. 사망·전출 등 지급 제외 사유와 부정수급 등에 따른 장수축하금 환수 기준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라.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규정(안 제8조)

마. 시행 당시 요건을 충족하는 95세 이상 주민에 대한 지급 근거 마련(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첨부)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6. 9. 14. ~ 9. 22.(의회사무과-3974), 표참고

의회원안	집행부의견(가족복지과)	검토안
제2조(정의) 3. “지급기준일”이란 장수노인이 주민등록상 9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말한다. 다만, 장수노인이 전입하는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한다.	제2조(정의) 3. 삭제 (사유) 지급 시점의 명확성 확보(개인의 생일에 기반한 객관적 기준 마련)	불수용 지급기준일과 거주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지급기준일 정의를 유지하며 기존 장수노인의 형평성과 제도의 연속성을 위해 시행 당시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유지
제3조(지급대상)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평창군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사유)거주기간 요건을 명시하여 지급대상 명확화	
제4조(지급내용)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00만원 상당의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평창사랑상품권(평창사랑카드)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내용)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50만원 상당의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평창사랑상품권(평창사랑카드)을 지급한다. (사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수혜 대상 확대와 재정 부담을 고려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혜택 제공	
부 칙	부 칙	

제2조(경과조치)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평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95세 이상인 장수노인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삭제 (사유) 수정된 제3조가 지급대상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요건을 포함하므로 별도의 경과조치 불필요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9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장수노인의 장수를 기원하고 노후생활의 안녕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장수노인이 주민등록상 9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4조(지급내용)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00만원 상당의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평창사랑상품권(평창사랑카드)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장수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신청일부터 다음 달의 말일까지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④ 그 밖에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지급 제외) 군수는 장수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일 기준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수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평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95세 이상인 장수노인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지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전입일	년 월 일 (거주기간 :)		※담당 공무원 확인 후 기재

「평창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평창군수 귀하

제출서류	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 시)
신청 시 유의사항	※ 지급제외 · 전액 환수 –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기준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평창군 외로 전출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장수축하금 신청을 위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 · 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

위 임 받은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대상자와의 관 계	
	위임사유			

「평창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별지 제3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일련번호	지급대상자			신청일자	지급일자	비 고 (연락처)
	성명	생년월일	주 소			

관 계 법 령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1. 3., 2011. 8. 4., 2015. 12. 29., 2016. 12. 2.>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평창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9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 장수노인 1명당 1회 100만원 상당의 평창사랑상품권(평창사랑카드) 지급

○ 관련조문 : 안 제3조(지급대상) 및 제4조(지급내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은 조례 시행일인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 평창군 장수축하금 지원사업 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5세 이상 노인에게 1회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로 집행

나. 추계 결과

(단위 : 명,천원)

구 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계
총소요액	141,000	49,000	84,000	87,000	127,000	488,000
지급대상자(명)	141	49	84	87	127	488
세출	141,000	49,000	84,000	87,000	127,000	488,000

※ ‘26.8월말 연령별 인구통계 기준 산정

다 . 재원조달 방안 : 자체재원(군비)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연락처	(033) 330 - 2124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출		141,000	49,000	84,000	87,000	127,000	488,000
장수축하금 지원		141,000	49,000	84,000	87,000	127,000	488,000
재원 조달		141,000	49,000	84,000	87,000	127,000	488,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41,000	49,000	84,000	87,000	127,000	488,000
	지방세(군비)	141,000	49,000	84,000	87,000	127,000	488,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